



재해 개요

- 2019.11. 4.(월) 16:45경, 「OO국가산단 인입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」현장에서 재해자가 통로암거 날개벽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암거 상부의 안전난간에 체중을 지지하자 난간 기둥이 탈락되면서 안전난간 자재와 함께 농로 바닥으로 떨어져(H≈6m) 당일 사망



재해 발생 원인

- 개인보호구(안전모) 미지급
 -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철도노반 건설현장에서 운전원 직종인 재해자에게 안전모를 미지급하여 재해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
- 출입의 금지조치 미실시
 - 추락의 위험이 높은 통로암거 날개벽으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 금지조치를 하지 않음
- 통로암거 상부 안전난간 설치 불량
 - 통로암거 상부에 안전난간을 최초 설치한 후 안전난간이 100kg 이상의 작용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난간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개인보호구(안전모) 지급 및 착용관리 철저
 - 추락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관리 철저
- 출입의 금지조치 실시
 - 통로암거 날개벽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조치 실시
- 안전난간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
 -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고,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철저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